긴급진단 골판지포장산업 정책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고 검토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에 대하여 골판지포장업계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 5일제 근무정책에 대한 업계 영향 분석,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업계 대응전략, 저금리 추세에 대응한 경영전략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골판지포장업계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다음 자료는 추후 전개되는 입법화 및 시행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Ⅰ. 주5일제 근무정책에 대한 골판지포장업계에 미치는 영향

Ⅱ.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따른 업계 대응방안 조회 결과

Ⅲ. 골판지포장시황 및 영업 환경 분석

Ⅳ. 산업연구원의 『제지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 주요내용

Ⅰ. 주5일제 근무정책에 대한 골판지포장업계에 미치는 영향

1. 노사정위의 추진 방향

1) 시행 : 2002년 7월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선시행후, 업종규모감안 연차적 실시

2) 휴가수당 현금지급 제한

3) 연간 총휴가일 140일 선으로 한정

2. 응답자 수 : 조합원사 62개사중 35사

3. 응답내용

1) 1일 가동시간

	9 H	10 H	11 H	14 H	22 · 24 H	기타
응답 빈도수	3	5	7	6	10	4

2) 연간휴일수

① 연월차 상한일 : 19.1일

② 년간휴가일 : 64.6일

3) 5일 근무제 근로자 1인당 급여 감소율(남여 평균): 6.2%↓

4) 5일 근무제 종업원 증가율 : 10%↑

5) 기업당 임금부담 증가율 3.2%↑(할증 50% 감안시 5.0%↑)

4. 설문 평가

5일근무제 시행은 경영측면에서는 비용이 증가되고, 생산성 측면에서는 생산량은 감소할 것이나 생산성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아울러 인력이 추가 투입되어 인건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골판지포장업계의 입장에서는 시기상조이며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휴일수를 조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룸

II.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따른 업계 대응방안 조회 결과

1. **법의 시행** : 2002년 7월 1일
2.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비교**

구 분	민 법	제조물책임법
사 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	결함책임의 원칙
책임한계	제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발생된 손해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발생된 손해
입증한계	주관적인 사실(제조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제품에 결함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
책임대상	과실이 있는 자	결함의 원인을 제공한 자

3. **제조물 책임법 해설**

① 책임을 지는 자 : 당해 제품을 제조한자, 가공한 자를 말하며 OEM등의 경우 1차로는 주문자가 지고 실질적 제조자는 추후 구상권을 행사 당하게 됨.

② 결함 :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사용방법, 주의 등을 표시하지 않음으로 발생)

③ 연대책임 : 부품제조업자는 완성품제조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면책 : 제조물을 유통치 아니하였거나, 결함자체를 부인하는 것, 비영리유통, 주문자의 설계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입증이 있을 경우 면책이 된다. 그러나 결함을 예견하였음에도 주문에 응하였다면(과실이 없어야함) 면책대상이 아님.

4. **설문조사**

1)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입법되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나, 이 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모르고 있었으며, 교육참가 경험도 전무하였음.

2) 제품수주시 주문서를 받는 비율은 평균 58%이고, 이 중에서 품질을 지정하여 수주되는 비율은 42%였음.
3) 향후 PL법 시행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대부분이 제품의 품질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품질표시 정착으로 거래의 신뢰도가 증진될 것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을 보였음.
4) 향후 PL법 관련 공제보험 기입은 업계동향을 고려한 후 가입을 결정할 계획이고, 보험요율은 업종별 책임발생율에 따라 차등적용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음.
5) 기타 의견으로는 PL법은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시행되는 법인데 산업용재를 생산하는 분야까지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5. 골판지포장업계의 대응전략

1) 주문요구사항을 표시한 발주서를 받아야 할 것이고, 철저한 사전사후관리가 요구됨.
조합에서는 공정위의 협조를 받아 골판지포장업종 표준계약서 모델을 개발이 필요함.
2) 법적규제나 시험 규정을 준수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검사 성적서 등의 확보
3) 시효는 10년간이므로 문서나 품질기록서의 보관은 10년 이상하여야 함.

III. 골판지포장시황 및 영업 환경 분석

1. 조사 개요

초 저금리상황을 보이고 있는 최근의 시중금리동향과 침체 일변도의 시황에 직면한 업계의 대응력을 확인 검토하기 위하여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골판지 포장산업 영업환경을 조회한 결과 총 62개사 중 32개사 에서 의견을 주었음.

2. 설문 평가

1) 생산 및 판매현황
2001년 6월까지의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0%이내의 성장을 보였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65%, 10%이내의 감소를 보였다는 응답이 20%, 10 - 20%의 신장을 보였다는 응답이 10%를 보였으며, 매출액에 있어서는 10%이내의 감소를 보였다는 응답이 55%, 10%이내의 증가를 보였다는 응답이 30%, 10 - 20%감소를 보였다는 응답이 10%였다.

2) 거래조건

업체별 1일 생산품목 및 롯트별 수량을 묻는 질문에는 골판지는 23품목, 골판지상자는 38품목 평균 롯트별 수량은 2,716㎡로 집계되었다.

3) 원부자재 및 제품의 거래조건을 확인한 결과 골판지원지구입시 전량현금결제하는 경우가 45%, 일부 현금 결제가 55%라고 응답하였으며, 어음결제의 경우 결제기간은 2개월이 35%, 3개월, 4개월이 각각 30%라고 응답하고, 현금결제의 경우 응답율 90%가 6%라고 답하고 8%라는 응답도 5%를 보임.

골판지시트의 대금 결제조건은 지함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모두 어음과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DC폭은 90%가 6%를 적용하고 일부는 7%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DC폭이 적정한가의 질문에 응답자의 70%가 4%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었고, 나머지는 현행 6%를 지적하였다.

주문수량별 할증제 적용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시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주문수량할증제를 적용할 경우 그 기준 수량은 200㎡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20%, 500㎡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50%로 나왔다.

4) 운송조건

골판지시트의 평균운송거리는 41.7㎞였고, 운송거리별 거래단가 차등적용을 묻는 질문에는 60%가 일부적용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적용되지 못한 경우도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계의 운송관행중 우선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는 첫째, 소량 주문의 발주자 책임운송, 둘째 운송거리별 운반비 차등적용, 셋째 상하차 비용의 발주자 부담, 넷째 운송트럭의 유개화를 들고 있었다.

3. 결과

1) DC율

현재 시중금리가 5%대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판지시트의 현금 DC율은 연리 20%에 이르는 만큼 현금 결제가 경영악화의 주요인 으로 등장하는 아이러니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 설문과 병행하여 업계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의견 교환을 한 결과 DC율을 4%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과 어음 결제를 줄이는 방향에서 DC 율을 낮추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양론이 분분하였고, 향후 가격기준을 어음가격이 아닌 현금가격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음.

2) 발주조건별 가격 차등화

소량주문 과 운송거리별 원가부담요인을 거래가격에 전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음. 주문수량 할증제의 기준은 주문량 500㎡를 기준으로 하고, 평균거리가 41.7 ㎞ 인 점을 감안하여 적정 운송거리 기준을 정하여 차등가격제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스코어 가공을 제한해야할 것임

Ⅳ. 산업연구원의 『제지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 주요내용

제지연합회에서는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연구원(KIET)에 『제지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을 연구 의뢰하고, 지난 2001년 6월 8일자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음.

이 보고서의 내용중 골판지원지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발췌하였음.

1. 기본방향

1) 고부가가치 종이 판지제품 생산, 수출 확대

① 노후설비 개체 및 품질수준 제고

② 생산지종의 특화전문화

2) 아웃소싱등 글로벌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산판매 확대전략의 추진

① 원가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기업재편, 전략적 제휴 등의 추진

② 중국내수 및 제3국 시장 진출 확대

2. 세부 추진 방안

시장수요 및 국제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생산, 판매체제의 구축과 적극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한 원가절감 및 수익의 극대화

1) 그룹사별 종이판지제품 생산업체의 통합 운영

2) 과다 노후설비 폐기매각 처분
3) 전략적제휴추진 : 원료의 공동구매, 지종간 규격별 교환생산, 공동판매 등의 협력사업 추진
4) 공동물류시스템의 구축 : 현행 개별업체 단위의 물류시스템을 동종업체간 통합전문유통업체를 설립하여 공동수배송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5) 전자상거래 등 시스템 구축
6) 업계의 수입지류 유통시장 참여

2004년 종이판지제품의 무관세화 될 경우 인쇄용지분야는 인네, 중국으로부터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업계 공동 출자에 의한 전문 수입업체를 설립 운영하여 내부장벽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3. 골판지원지업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

1) 일관생산체제 구축

일관체제구축은 현행 골판지 원지로 부터 골판지상자까지 3 - 4단계의 물류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서 물류유통비 절감 등이 가능해져 최종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수 있을 것임.

2)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
3) 폐수 재활용 기술개발 및 폐수의 환경부하 저감을 적극 추진
4) 환경친화 에너지 저소비형 생산구조로 전환

4. 정부의 경쟁력강화 지원시책

1) 폐지수집기능의 강화

일본의 고지재생촉진센터와 같은 기능의 공공법인 설치 운영으로 폐지 비축 공동구매 등으로 수급 및 품질, 가격안정화 실현

2) 노후설비의 해외이전 지원
3) 법제도의 정비

① 골판지상자제조업종의 2002년도 고유업종 해제 지원
(골판지상자제조업은 2001. 9. 1일자로 해제)

②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지종간 특화전략 등의 전략적 제휴 시 공정거래법 저촉 회피 검토

③ 기타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금융 및 재정적인 지원